

의안번호	2207908
의 퇴 인	이인선의원
회 답 일	2025.3.14.
추계번호	25D0658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탁관이 관할 법원 및 검찰청에 형사공탁 출급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,500만원, 2030년 1억 9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억 1,300만원 (연평균 1억 8,3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형사공탁 출급 통지 (안 제5조의2제5항)	175	179	183	186	190	913	183

주: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(형사공탁의 특례)제5항 신설	공탁관은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의2(형사공탁의 특례)제5항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 공탁관이 관할 법원 및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통지서 송달료 등임

- 「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9조¹⁾에 따라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공탁물출급통지도 이와 동일하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함 (현재 공탁업무에서 1건당 기준송달료는 4,980원임)
- 공탁물출급통지 업무는 현재 전국 총 169명의 공탁관의 인력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는 추계에서 제외함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⁾

□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으로 함

1) 「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9조(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)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.

1. 공탁사건 정보: 공탁번호,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,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, 공탁물, 공탁 연월일

2. 공탁당사자 정보: 공탁자 성명, 피공탁자 성명

3.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

4. 문서확인번호(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②~⑥ (생략)

2)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. 기준)

(단위: %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형사공탁 출급 통지(안 제5조의2제5항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형사공탁 출급 건수를 추정하고, 이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통지서 송달료를 곱하여 추계함
 - 최근 5년간 형사공탁 출급 건수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최근 5년간 형사공탁 출급 건수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형사공탁 출급 건수	4,632	3,633	2,791	13,209	22,021

주: 형사공탁 출급 건수는 「민법」 제487조에 따른 일반 형사변제공탁과 「공탁법」 제5조의2(2022. 12. 9. 신설)에 따른 형사공탁을 합한 건수임
 자료: 대법원

- 출급 건수는 증감 추이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 건수의 평균(17,615건)으로 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- 대법원에서 제공한 현재 공탁업무에서의 1건당 기준송달료 4,980원을 적용하고, 각 관할 법원과 검찰청 총 2곳에 통지하는 것으로 함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른 형사공탁 출급 통지 송달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억 1,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형사공탁 출급 통지 송달료 추정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형사공탁 출급 건수 (a, 건)	17,615	17,615	17,615	17,615	17,615	—
통지 송달료 (b, 원)	4,980	5,080	5,181	5,285	5,391	—
통지 기관 (c, 곳)	2	2	2	2	2	—
합 계 (a×b, 백만원)	175	179	183	186	190	913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